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

제출년월일 : 2008. 1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○ 최근 이상기온으로 자연재해의 대형화와 예측불능 등 행정력만으로 자연재해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자원봉사단체 및 개인 등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민간중심의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자율방재단(협의회)을 구성하여 위험지역 순찰·점검과 재난상황전파 및 응급복구 참여 등 재해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를 통한 "안전하고 재해에 강한 마을을 만들기"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명칭을 규정함. (안 제2조)
- 명칭은 "평창군지역자율방재단(이하 "방재단" 이라 함) 이라 함.

나. 방재단 구성을 규정함. (안 제3조)
- 방재단은 단장 1인, 부단장 1인,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토록 명시함.

다. 방재단의 임원 및 임기에 대하여 규정함. (안 제4조)
- 단장은 방재단 업무 총괄 및 대표하고, 간사는 회계 담당 및 회의기록,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

라. 방재단원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함. (안 제7조)
-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, 대비, 대응, 복구 등 재난관련 전분야에 활동

마. 방재단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. (안 제9조)
-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 시 평창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음을 명시함.

바. 방재단원의 금지행위를 규정함. (안 제11조)
- 단장 및 단원은 기부행위나 정치활동 등에 참여할 수 없음을 명시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붙임1

나. 예산조치 : 자원봉사체계로 운영(예산은 운영의 실효성 등을 감안, 향후 국고보조 등 중앙차원에서 지원체계 마련)

다. 입법예고 : 2007. 8.24 - 9.17(25일간)실시결과 의견없음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역자율방재단 설치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(이하 “방재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3조(방재단의 구성) ①방재단은 단장, 부단장, 간사 각 1인을 포함한 20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방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,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가 위촉한다.

③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.

④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고,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⑤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.

⑥방재단의 참가자격은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·단체·기업체·기관·학교·종교단체·동호회 등으로 한다. 단,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

⑦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·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.

⑧읍·면 방재단원은 군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,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.

⑨읍·면 방재단 대표(이하 “읍·면 대표”라 한다)는 해당 읍·면 방재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.

제4조(임원의 임무 등) ①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며,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.

②단장은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,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.

④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, 회의기록 작성, 행정업무 등을 처리한다.
⑤읍·면 대표는 읍·면 방재단을 대표한다.
⑥단장, 부단장, 간사 및 읍·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단원의 해임)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.
1.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
2. 단원이 군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. 다만,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3.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4.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5.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
제6조(지역자율방재협의회) ①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·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·조정을 위하여 평창군지역자율방재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한다.
②협의회는 단장,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, 읍·면 대표,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.
③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.
④협의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회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으며,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⑤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,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, 장비,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⑥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·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제7조(방재단의 임무) ①방재단은 재난의 예방, 대비, 대응,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,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.
②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, 주요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방재단의 인적·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
2.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·정비
3. 재난 예방·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
4. 재난관련 교육·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·훈련실시

5.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, 주민대피유도, 차량통제 등
6.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,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
7. 재난지역의 응급복구(전기, 통신, 상·하수도 등)
8.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
9. 인력, 장비, 물품 등 수요 파악
10.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,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,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
11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의 교류 및 연구 활동
12.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
13. 그 밖의 안전관련 활동

③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범위, 시기,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.

④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,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.

⑤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및 강원재난안전네트워크가 주최하는 회의 및 행사 참여 등 평창군재난안전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.

⑥강원재난안전네트워크에 재난상황의 전파 및 필요시 지원요청을 한다.

제8조(소집) ①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,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.

③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. 다만,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.

제9조(운영 등) ①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,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④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평창군재난종합상황실(이하 “종합상황실”이라 한다)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. 단,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, 인원, 조건, 임무 등에 대해서는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

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⑤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⑥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.
⑦단장은 매년 8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⑧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10조(예산지원)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방재단에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금지행위)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1.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
2.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
3.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
4.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

제12조(출입증 발급) ①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.
②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.

제13조(교육) ①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,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②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.
③단장은 제2항의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(민간기관 포함)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④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으며,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.

제14조(훈련) ①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, 단장이 요청하

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②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5조(중앙지원단 자문) ①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·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(감독) ①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「평창군수방단운영조례」는 폐지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위 촉 장 양 식

(제4조제2항 관련)

위 촉 장

주 소

성 명

귀하를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평 창 군 수

[별지 제2호 서식]

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<개인>

(제4조제4항 관련)

등록번호 :

성 명	○○○(성별)	연 령		혈 액 형	
주 소				일반전화	
				휴대전화	
자 격 증 또는 기능		운전가능여부 (면허종류)			
재 난 현장경험	※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) ○○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, 이재민 구호, 차량통제, 인명구조, 장비지원.....등 구체적으로 정리				
희 망 활동내용	※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				
[특이사항] ※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					

상기 본인은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가입희망자 ○ ○ ○(인)

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

[별지 제2-1호 서식]

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<단체>

(제4조제4항 관련)

등록번호 :

<table>
<tr><td>단 체 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대 표 자</td><td colspan="2">○ ○ ○
(휴대전화)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3"></td><td>대표전화</td><td></td></tr>
<tr><td>담 당 자</td><td colspan="2">○ ○ ○
(휴대전화)</td><td>부서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인 원</td><td>남 ○○명</td><td>여 ○○명</td><td>총인원</td><td colspan="2">○○명</td></tr>
<tr><td>장 비</td><td>장비명(규격)
○○ 대</td><td>장비명(규격)
○○ 대</td><td>장비명(규격)
○○ 대</td><td colspan="2">장비명(규격)
○○ 대</td></tr>
<tr><td>지원가능</td><td>남 ○○ 명
여 ○○ 명</td><td>장비(규격)
○○대</td><td>장비(규격)
○○대</td><td colspan="2">장비(규격)
○○대</td></tr>
<tr><td>전문분야</td><td colspan="5">※ 단체의 성격 정리
예) 인명구조, 이재민 구호, 장비지원, 차량지원.. 등 구체적으로 정리,</td></tr>
<tr><td>활동희망분야</td><td colspan="5">※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[특이사항]

([별지 제2-2호 서식]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)</td></tr>
</table>

상기 본 단체는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대 표 ○ ○ ○(인)

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

[별지 제2-2호 서식]

[가입희망 회원명부]

[단체명]

연번	성 명	성별	연령	자 격 증 및 기능	운전가능 여 부	혈액형	비 고
1							
2							
3							
4							
⋮							

[별지 제3호 서식]

활 동 확 인 서 (예시)

(제9조제1항 관련)

<table>
<tr><td>성 명</td><td colspan="2">(인)</td><td>등록번호</td><td>※ 서식2의 등록번호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활동내용</td><td>사 유</td><td colspan="3">※ ○○태풍, ○○지역 집중호우, ○○지역 설해 등</td></tr>
<tr><td>방 법</td><td colspan="3">※ 인력,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</td></tr>
<tr><td>시 간</td><td colspan="3">○○○○년○○월○○일 부터
~○○○○년○○월○○일 까지 (○○시간)</td></tr>
<tr><td>장 소</td><td colspan="3">※ ○○면(군)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</td></tr>
<tr><td>내 용</td><td colspan="3">※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
예) ○○지역 사전예찰 00시간,
○○마을 차량통제, 00시간
○○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[건의사항]
※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확인자 직위 ○○읍(면)대표 성명 (인)</td></tr>
</table>

본인은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평창군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

※ 확인자는 읍면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

[별지 제4호 서식]

단원 활동현황 총괄표

(제9조제2항 관련)

등록 번호	성 명	활 동 상 황		비고
		횟수	시간	
1				
2				
3				
⋮				

※ 등록번호
- 개인의 경우는 [별지제2 서식]의 등록번호를 기재
- 단체의 경우는 [별지제2-1 서식]의 등록번호와 [별지 제2-2 서식]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[(예) 10-1]

※ 횟수,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

※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흔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

※ [별지 제 3-1호 서식]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

※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

[별지 제5호 서식]

‘○○년도 연중 활동계획서

(제9조제7항 관련)

[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]

월별	주 요 내 용	비고
1	○ ○	
2	○ ○	
3	○ ○	
4	○ ○	
5	○ ○	
6	○ ○	
7	○ ○	
8	○ ○	
9	○ ○	
10	○ ○	
11	○ ○	
12	○ ○	

※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

※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

[별지 제6호 서식]

출 입 증

(제12조제2항 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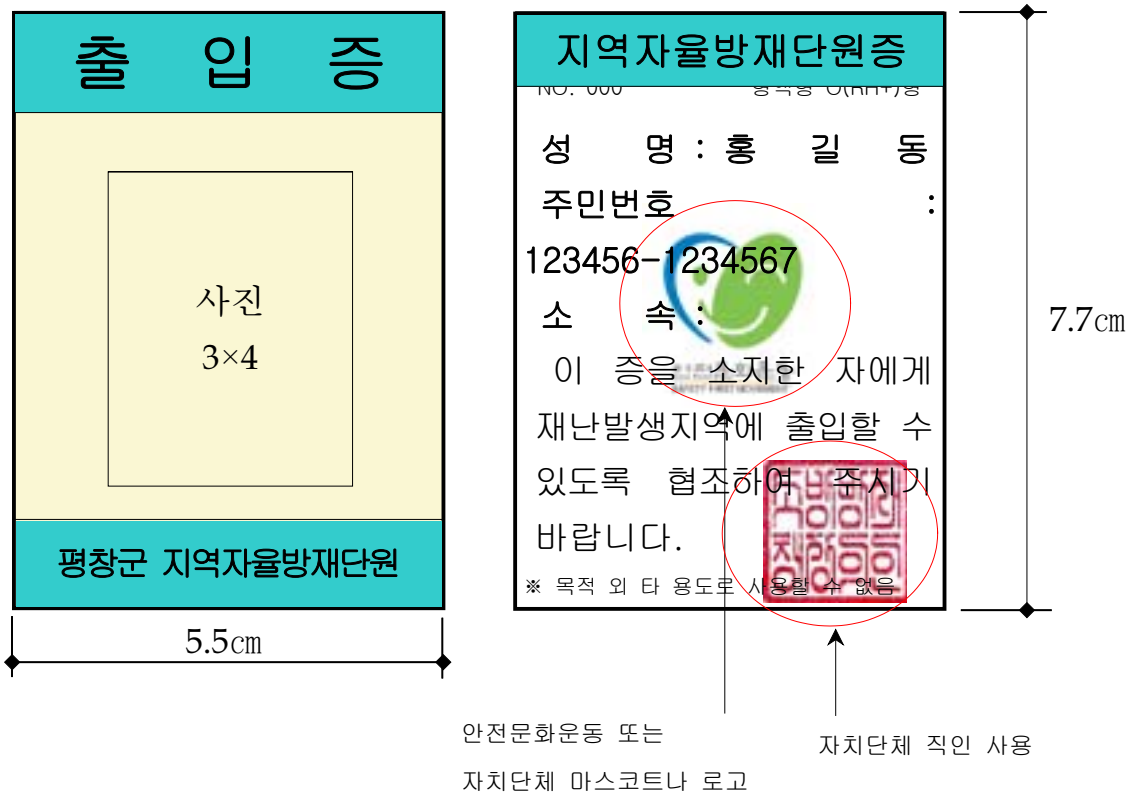

【관계법령】

■ 자연재해대책법

제66조 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) ①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, 봉사단체, 방재관련업체,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예방·대응·복구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

제60조 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)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율방재단은 시·군·구 단위로 구성·운영한다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·면·동 단위로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.

③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(이하 "지역자율방재단장"이라 한다)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.

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제62조 (교육 및 훈련 등) ①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교육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그 **밖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·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**

제65조 (예산지원)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